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4. 8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4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9. 4. 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 석 원

가. 개정이유

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, 투표연령 하향 조정 (20세→19세)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사무 정착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 내용

- 1)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 의무 신설 (안 제2조제4항)
- 2)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(안 제3조)
- 3)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, 체류지로 신분 확인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4)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리

※ 위 내용을 별지 제1호~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: 명금길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“20세 이상”에서 “19세 이상”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 정착 및 투표사무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

<개정,신설된 주요내용>

(1) 안 제2조제4항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신설

(2)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“20세 이상”에서 “19세 이상”으로 하향 조정함

(3) 안 제8조,제9조,제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 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거소, 체류지로 신분을 확인함

(4)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적절한 용어로 정리

(5) 별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 중 작성요령에도 위 내용을 반영하였음

[검토의견]

○ 현행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의 연령과 상이하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, 또한,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어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연령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,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추가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대장 정리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